
제 6 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사례 55 2020서울조정20·21 / 정정·손배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을 언급하면서 신청인의 이름만 빼고 보도한 데 대해 언론사의 취재·편집의 자유와 허위보도가 아님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통신사인 피신청인은 A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과 후보들의 최근 행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통신사로서 영향이 큰 피신청인이 A시갑 7명의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본인의 이름만 빼고 보도하여 여론조사,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피신청인은 의도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 중 신청인만 제외하고 보도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을 부각하여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사의 취재·편집의 자유에 속하고, 예비후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비후보자 중 한 명인 신청인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야권에서는 출마 희망자들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중략]

B당에서는 A도당 C위원장 직무대행이 출마할 예정이다.

D당에서는 A도당 F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에 합류했다.

무소속인 G공인회계사는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에 이어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또 A대 H교수는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당 선택을 놓고 고심 중이다. [후략]



사례 56 2020서울조정129 / 반론청구

조정대상 보도에서 신청인의 반론이 상당 분량 보도되었음에도 이를 요약한 형태의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기각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A국회의원이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직 공무원을 역임하는 동안 본인, 배우자, 아들들의 명의로 각각 부동산을 매입해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직위나 직책을 이용한 바 없는데 마치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돼 정치인으로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A의원은 본인, 배우자, 두 아들 명의로 각각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가 아니며 직위나 직책을 이용한 점이 전혀 없다.
- 강남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수 있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A의원만 의도적으로 취재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에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는 해당 보도에 포함된 신청인의 반론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A의원이 가지고 있는 송파구의 땅입니다. 석촌역에서 걸어서 5분 이른바 더블역세권입니다. 1978년 B부처 공무원시절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실 인근의 땅을 산 겁니다. 현재 시세는 낮게 잡아도 20억 원 정도.

실거래가 3.3제곱미터기준 1억 원을 넘었다는 아파트는 본인 명의, 올해 입주 예정인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배우자인 아내 명의입니다. [중략]

A의원은 B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수십 년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깊은 공직에 있었습니다. [중략]

C / D단체 국장

2014년 말을 기해서 재건축단지에 대한 특혜 조치 법안이 하나가 통과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재건축단지가 다시 어떤 가치도 오르고 사업도 활발해지는 과정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강남 3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더라고요. [후략]



사례 57 2020서울조정250, 2020서울조정251 (병합) / 각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와 법적 분쟁 중인 전 회장을 신청인의 대표자로 보도한 데 대해 PR보도 게재와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1은 A단체 회장의 인터뷰 보도를 게재하였고, 피신청인 2는 같은 인물이 관련 소송의 종료로 새로 A단체의 회장 임기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단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단체 회장이라고 보도된 B씨는 전 회장으로,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C단체와 D협회는 법정단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통합 창립총회를 열고 A단체를 창립, 1대 회장으로 B씨를, 2대 회장으로 E씨를 선출했다.
- A단체 전 회장 B씨의 임기는 만료되었으며 현재 2대 회장 E씨가 재임 중이다.
-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며 B씨가 A단체의 회장 임기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1은 신청인 단체의 회장을 인터뷰한 것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C단체의 회장 B씨를 인터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B씨를 현 회장으로 인터뷰하여 보도한 언론사는 현 회장 E씨의 인터뷰를 담은 PR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 단체 전 회장이 임기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기사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2020서울조정250]

비영리민간단체 C단체의 B회장이 D협회와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를 위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후략]

[2020서울조정251]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인터넷 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한다.

PR보도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 비즈면에 신청인측 입장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되 그 분량은 조정대상기사 보도 분량의 70% 이상으로 하고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서비스사업자(네이버, 다음)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58 2020서울조정399 / 손해청구

신청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잘못 보도한 데 대해 사과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정당 소속의 한 의원이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 이게 분명한 찬스니까”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정당은 소속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은 “지금 분노에 차있으니까”로, 사실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단순 실수이고, 방송 이후 충분히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사과 방송에 대해 수용의사가 있으나 보도방법과 관련해 피신청인과의 합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보도 내용, 시간 등에 대해 양보하여 합의할 것을 권유, 양 당사자가 보도방법을 조율하여 사과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A정당 B의원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A정당 C의원

“그러게. 아침에 내가 서있는데 경적 울리고 헤드라이트 하는 게 4년 전 보다 훨씬 많아졌어.”

A정당 B의원

“지금 이게 분노에 차있으니까…”

A정당 C의원

“그러니까 잘 관리만 하면 된다고...”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조정대상보도에서 A정당 소속의 한 의원이 “지금 분노에 차있으니까”라고 발언한 내용을 “지금 이게 분명한 찬스니까...”라고 보도한데 대해 당사자 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방송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표시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 다시보기면에 위의 내용에 따라 보도된 영상을 게재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유튜브, 네이버, 다음, 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에 따라 이행한 영상을 전송한다.



사례 59 2020경남조정51 / 반론청구

학교 몰카 범죄 용의자의 특정 직군을 명시한 보도에 동일 직군인 신청인이 반론청구를 한 데 대해 보도와 신청인간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었는데 범인이 해당 학교 40대 체육교사였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체육교사'라는 특정 직군을 명시한 것은 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이라는 보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현직교사', '교사' 등으로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면서도 '체육교사'라고 보도해 해당 직군의 사회적 인식을 저하시키고 신청인을 포함한 체육교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조정대상보도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인의 특정 직군인 '체육교사'를 적시해 피해를 입혔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보도 내용 중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그 보도 내용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불법촬영카메라는 지난달 24일 A도 B시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소를 하다 발견됐는데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찾고보니 놀랍게도 범인은 이 학교의 40대 체육교사였습니다. 게다가 설치된 장비는 고화질의 방수기능까지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후략]

사례 60 2020경기조정285 / 정정청구

주민대표위원장의 ‘갑질’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해당 반론보도를 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게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인 A주민대표위원장이 주민들을 향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고리이자를 소개하여 이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운영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대표위원해임안을 결의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씨는 고소사건은 3건에 불과하고, 필요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 협조로 특판상품을 개설한 것이며, 대표위원해임안을 결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의한 것인데도 주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이 주민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건은 총 3건이다.
- 고리이자를 소개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필요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 협조로 특판상품을 개설한 것이다.
- 주민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이의제기 했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발의’한 것이며 위원장 단독 발의가 아닌 공동 발의였다.
- 카톡이나 문자로 가짜계약을 작성하여 대위변제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은 주민대표회의가 아닌 타 집단에서 안내한 것이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전해왔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반론보도로 게재하는 조정안을 권유,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 게재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해당 반론보도는 400여명 주민들의 소통 창구인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게시하도록 합의했다.



조정대상보도

최근 B시 주거환경개선사업 C지구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지나친 갑질에 분노하여, 주민 일동이 A위원장 갑질 사례를 알리고, A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청원서를 B시에 보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B시는 일주일 만에 토지및소유주 주민 10%의 동의하에 직무정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회신해 왔다고 전해왔다. C지구 주민들이 전해주는 A위원장의 갑질 사례는 기가 막힐 정도로 다양하다.

고소를 당한 후, 이미 무혐의 처리를 받은 D주민은 “A위원장은 주민들을 향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가 안나온다길래 그걸 물어보러 갔다가 소리좀 쳤다고, 경찰을 부르지 않나,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1-2년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A위원장은 무혐의 처리가 나오는 줄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하는 주민들에게 주민 협박용으로 계속 고소를 난발을 하고 있습니다.”고 전해왔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주민대표위원장이 주민들을 향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E금고의 5.5%의 고리이자를 소개하여 이주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운영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대표위원해임안을 결의하는 등 직권 남용하였고, 또한 주민들에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들은 호적을 분리시켜 가짜계약을 작성하여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카톡이나 문자로 전해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주민 대상으로 부득이 고소고발한 것은 주민대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올려와 고성과 물품을 훼손하는 등으로 업무방해죄 ‘50만원 벌금형’ 사법기관 판결로 종료된 1건과 400 여명이 모인 카톡방에 위원장을 머슴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2건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5.5%의 고리이자를 소개하게 된 것은 일부 필요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금융기관 협조 하에 특관상품을 개설한 것이었으며, 주민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해 이의제기 했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결의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결의’ 된 것이 아니라 ‘발의’된 것이며 위원장 단독발의가 아닌 공동발의형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로 가짜계약서 작성하여 대위변제를 받으라고 하였다 것은 주민대표회의에 반하는 집단에서 안내한 행태를 주민대표회의에서 한 것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행정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의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위의 보도문에서 언급된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카카오톡> *** 개최방에도 위의 보도문을 게시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



사례 61 2020서울조정2084·2085·2086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과 소송 중인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기고문을 게재한 데 대해 반박 기고문 게재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A공사와 B시민단체 간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원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다룬 기고문에서,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A공사가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이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해당 항소심 재판은 신청인과 B단체 양측 모두 항소한 것이고, 신청인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판결에 따라 건설 원가를 공개할 예정인데도 B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 A공사가 건설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이 있다는 허위 기고문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반론보도 및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해당 항소심 재판은 A공사와 B시민단체 양측 모두 항소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A공사는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과정을 따르고 있다.
- A공사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건설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반박 기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를 신청인이 수용하여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B시민단체와 A공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다. 지난 4월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A공사는 ‘기업 영업비밀’ 등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지금까지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 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도시에서만 수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임을 내세워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개발에 참여, 더 큰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땅장사, 집장사, 원가공개 거부 등 공공성이 퇴색된 공기업이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으며 A공사는 지금 당장 원가공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기고문 게재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신청인 측의 반박, 해명 등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하되, 분량, 제목 크기, 게재 위치 등은 이 사건 조정대상 기고와 동일하게 하고, 신청인의 기고 내용에 피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위의 기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고의 본문 하단에도 위의 기고문의 제목과 링크를 삽입하도록 한다.



사례 62 2020서울조정2681/2682 / 각 정정청구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의 인터뷰를 담은 후속보도를 신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접 호텔을 운영하려는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방송에서 인터뷰한 인물들로 인해 호텔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 마치 신청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것처럼 보도하여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신청인의 명예도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4인은 관련 호텔을 무단점유하여 사익을 취하고 있다.
- 인터뷰한 4인 중 3인은 시행사, 운영사, 관공서 등으로부터 불법 점유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 중이다.
- 방송에 사용된 영상 및 방송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보도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영상 수정 및 반론 게재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적인 보도게재는 불가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심리 중 피신청인이 입장을 바꿔 후속보도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신청인이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사회자 : 매달 고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판매된 호텔 분양권, 이 말에 호텔 객실을 분양 받았다는 사람들. 그런데.

A : 준공하고 3개월 운영해서 첫 수익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날부터 단 1원도 수익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매달 꼬박꼬박 백만원 가량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B : 저는 1억 7천짜리 1억 대출 받았죠. 이자 나오는 거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후략]

■ 조정성립 사항

후속보도 게재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동일 프로그램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후속보도를 한다.
- 신청인들의 반론 인터뷰를 반드시 포함한다.
- 이 사건 호텔 관련 다양한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 방송 분량은 기존 조정대상방송 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